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우수조달물품
안내매뉴얼

2021. 12.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overnment Excellent Products Association

이 책을 펴내며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신기술 기반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혁신조달' 정책을 2019년에 도입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도에 도입 된 이래 25년 간 기업의 기술 혁신 유도와 공공판로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아가 '공공혁신조달' 제도와도 연계하여 혁신제품의 판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혁신조달 정책 추진에 없어서는 안 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처음 접하는 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계약이나 사후관리 등에 궁금한 점 등을 문의해 왔습니다.

이에 이 책을 발간하여 우수조달물품 제도에 대한 소개는 물론,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운영되는 순서에 따라 각 절차별로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건, 방법, 연락처, 유의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자주 하는 질문'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 책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준비하고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조달청장 **김 정 우**

목 차 CONTENTS

Ⅰ. 우수제품 지정 제도 개요 1
1. 우수제품 지정 제도 소개 1
2. 우수제품 지정의 혜택 2

Ⅱ. 우수제품 지정 사전 준비 4
1. 입찰참가자격 등록 4
2. 물품목록번호 부여(예외사항 설명) 5
3. 기술소명자료 6
4. 품질소명자료(예외사항 설명) 7

Ⅲ. 우수제품 지정 절차 8
1. 우수제품 지정 계획 9
2. 1차 심사 10
3. 신인도 심사 11
4. 기술품질심사 15
5. 생산실태조사 18
6. 2차 심사 19
7. 최종 지정 20

Ⅳ. 우수제품 지정 이후 21
1. 단가계약 21
2. 규격추가 25
3. 지정기간 연장 28

Ⅴ. 우수제품 기술·품질 확보 35
1. 사후관리-지정 35
2. 사후관리-계약 39

부록. 자주 하는 질문 42

Ⅰ. 우수제품 지정 제도 개요

1. 우수제품 지정 제도 소개

■ 목적

-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지원

■ 대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된 혁신제품 (이하 "혁신제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

■ 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분야

■ 관련 서식

- 관련서식은 조달청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조달청: http://www.pps.go.kr(업무안내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협회: http://www.jungwoo.or.kr(알림마당 ⇒ 각종서식)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2. 우수제품 지정의 혜택

■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

-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 사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관리 등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제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수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포함)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이상으로 하여야 함(의무사항)('20.2.18 개정)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코리아나라장터엑스포 등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 우수제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운영
- 우수제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 우수제품의 브랜드 화
  - 우수제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제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 우수제품 지정마크

■ 우수제품 공급실적(최근 5년간)

(단위: 개,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품목수	43,965	47,601	51,391	63,907	79,129
품명수	443	430	422	470	464
업체수	808	796	782	876	890
공급 실적	23,770	28,206	27,673	32,739	34,948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업무안내→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

Ⅱ. 우수제품 지정 사전 준비

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우수제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신청물품의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제조(Y)로 등록되어야 함.
  단,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의 경우 **협업체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 가능

■ **신청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 메뉴 중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해당 신청항목 입력 후 **'송신'**버튼 클릭(※ 이때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서 우측상단의 '온라인 매뉴얼'과 e고객센터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1.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 인쇄한 시행문에 기재된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해당 **'조달업체이용자등록'** → **'등록/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서류제출)'**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 **등기우편, 직접방문** 제출

관련 문의처: 서울지방청 (02-590-8681)
인천지방청 (032-450-3500)
부산지방청 (051-330-6528)
대구지방청 (053-589-6602)
광주지방청 (062-975-5861)
대전지방청 (042-520-1146)
강원지방청 (033-260-2201)
충북지방청 (043-230-7730)
전북지방청 (063-240-6500)
경남지방청 (055-239-6731)
제주지방청 (064-800-6927)

2. 물품목록번호 부여

■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야 함

- 예외사항

  –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1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제품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 물품목록번호 부여 시까지 2차 심사 대상을 보류함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제품이 물품목록번호를 취득한 이후 2차 심사에 상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용방법: 상품정보시스템 로그인 → **'이용안내'** 클릭 → **'시스템 매뉴얼'** 선택 → **'2'**번의 업무처리 단계별로 매뉴얼 명 선택 후 참조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3/) → 사이트 상단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메뉴** 클릭 → **'품목등록'** 버튼 클릭 → 유의사항 **동의함** 확인 클릭 → **'품목등록요청하기'** 버튼 클릭 ①추천분류등록 ②기존 요청 참조등록 ③기존 품목 참조등록 ④일괄등록(신규상품 일괄등록 시 이용) 중 해당 내용 클릭

관련 문의처: 목록 대분류 11–15, 22–24, 41, 45–47, 51–52, 55, 60 [070-4056-7182]
20–21, 25, 31, 44, 48–50, 53–54, 56, 70–73, 76–78, 80–86, 90–94 [7257]

3. 기술소명자료

■ 신제품(NEP)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4번 목차(7p)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 신기술 적용제품(NET 등)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 특허·실용신안 제품

-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GS 인증)을 획득한 경우
  =>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단, 물품으로 신청한 경우 추가 품질소명자료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제품
  =>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23),
기계장치·과기의료·화학섬유·사무기기 (7144), 전기전자 (7233),
정보통신·지능정보 (7285)

4. 품질소명자료

■ 원칙적으로 품질소명자료인 아래의 품질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소재부품 신뢰성인증, ICT 융합품질인증

※ 유효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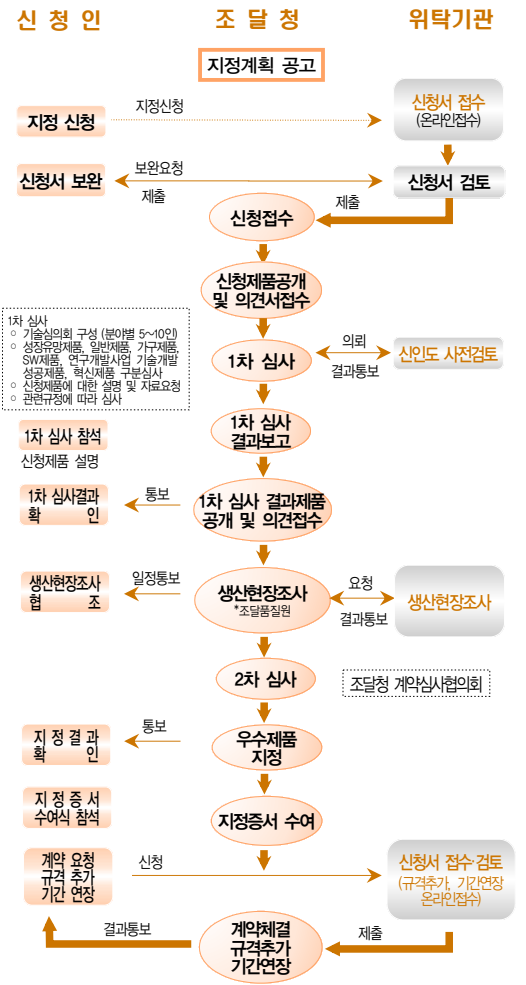
■ 예외사항

-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유효기간: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공인시험기관 시험 성적서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23),
기계장치·과기의료·화학섬유·
사무기기 (7144), 전기전자 (7233),
정보통신·지능정보 (7285)

Ⅲ. 우수제품 지정 절차


신 청 인
조 달 청
위탁기관
지정계획 공고
지정 신청
지정신청
신청서 접수
(온라인접수)
신청서 보완
보완요청
제출
신청서 검토
신청접수
제출
신청제품공개
및 의견서접수
1차 심사
○ 기술심의회 구성 (분야별 5~10인)
○ 성장유망제품, 일반제품, 가구제품, SW제품,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혁신제품 구분심사
○ 신청제품에 대한 설명 및 자료요청
○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1차 심사
의뢰
결과통보
신인도 사전검토
1차 심사
결과보고
1차 심사 참석
신청제품 설명
1차 심사결과
확 인
통보
1차 심사 결과제품
공개 및 의견접수
생산현장조사
협 조
일정통보
생산현장조사
*조달품질원
요청
결과통보
생산현장조사
2차 심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지 정 결 과
확 인
통보
우수제품
지정
지 정 증 서
수여식 참석
지정증서 수여
계약 요청
규격 추가
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 접수·검토
(규격추가, 기간연장
온라인접수)
결과통보
계약체결
규격추가
기간연장
제출

1. 우수제품 지정 계획

■ 차년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 지정대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 신청기한
  - 공고서에서 정한 기한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속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 우수제품 신규지정)
  - 신청서 양식: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각종서식)
  - 신청관련 문의처: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서울·경기·강원지역: 02-521-0014
    - 충청·호남·영남지역: 042-471-3006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23),
기계장치·과기의료·화학섬유·
사무기기 (7144), 전기전자 (7233),
정보통신·지능정보 (7285)

2. 1차 심사

■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기술의 중요도·품질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품질심사'와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신인도심사'로 구성

■ 심사 위원

-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 심사

■ 제외 대상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설치 등에 관한 기술인증
-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기준,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
- 성공 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혁신제품

■ 업체 준비사항

- 제품 설명 및 심사시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품설명(PT)은 업체가 제출한 지정신청서류로 발표

※ 제품 시연 및 실제 제품에 대한 동영상 파일 제출은 가능하나 그래픽, 음성, 소리, 자막 등 어떠한 효과도 삽입할 수 없음

3. 신인도 심사

■ **중소 · 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로 최대 배점 5점 (2022.09.01부터 최대 배점 3점)**

– ②, 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하며, 동일제품(품명)의 기준은 물품분류번호 8자리로 판단

–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

신인도 자기 평가표

(2022.08.31일까지 적용표)

Ⅰ. 가점항목	배점	자기 평점
① 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하나만 인정) 가. 신청업체의 최근 5년(접수마감일 전월 기준)간 수출 총액 – 30만불 이상 – 20만불 이상 30만불 미만 – 10만불 이상 20만불 미만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단, C등급 제외)	 (3점) (2점) (1점) (1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삭제〉, 〈삭제〉,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물산업 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재난안전제품	(1점)	
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 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중 실적이 있는 제품(최근5년)	(1점)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삭제〉, 〈삭제〉, 〈삭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1점)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하나만 인정)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초과~7년 이하), 기술나눔 우수기업, 〈삭제〉,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삭제〉,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1점)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2점)	
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최대 2점)		
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단, '22.1.1.부터 신규채용 우수기업 추가	(1점)	
나. 전체 고용 인원 증가율 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한시적 운영, '21.12.31. 까지)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5%, 중기업 4% 이상인 경우	(0.5점)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11%, 중기업 8% 이상인 경우	(1점)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20%, 중기업 15% 이상인 경우	(2점)	
⑥ 조달업무 유공업체 –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표창 받은 실적	(건당 0.5점, 최대 1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⑦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점)	
⑧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5점)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점)	
⑩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조달청장에게 통보된 사업장	(–5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 5점**	

신인도 자기 평가표
(2022.09.01일부터 적용표)

Ⅰ. 가점항목	배점	자기 평점
① 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인정) 가. 신청업체의 최근 5년(접수마감일 전월 기준)간 수출 총액 10만불 이상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단, C등급 제외)	(1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삭제〉, 〈삭제〉,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물산업 우수기자재 공급자 제품, 재난안전제품	(1점)	
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중 실적이 있는 제품(최근5년), 협력이익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삭제〉, 〈삭제〉, 〈삭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1점)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하나만 인정)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또는 창업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삭제〉,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삭제〉,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1점)	

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하나만 인정)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삭제〉, 신규채용 우수기업	(1점)	
⑥ 조달업무 유공업체 –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표창 받은 실적	(건당 0.5점, 최대 1점)	
소 계(최대 3점)	(3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 평점**
⑦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점)	
⑧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5점)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점)	
⑩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조달청장에게 통보된 사업장	(–5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I. 합계 (I+II)	**최대 3점**	

4. 기술품질심사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평가

■ 성장유망 제품 · 일반 제품(2022.08.31까지 적용)

- 기술심사 평가지표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기술의 혁신성
  -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 품질심사 평가지표
  -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조달물자로서의 품질 · 성능 신뢰성

■ 가구 제품(2022.08.31까지 적용)

- 기술심사 평가지표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기술의 혁신성
  -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 디자인심사 평가지표
  - 혁신성
  - 심미성
  - 사용성
  - 조화성
- 품질심사 평가지표
  -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조달물자로서의 품질 · 성능 신뢰성

■ 성장유망 제품(2022.09.01부터 적용)

- 기술심사 평가지표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기술의 혁신성(기술의 신규성·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본질적인 기능 관련 또는 일반·주변기술을 구분하여 하나만 평가)
- 품질심사 평가지표
  -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일반 제품(2022.09.01부터 적용)

- 기술심사 평가지표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기술의 혁신성
  -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본질적인 기능 관련 또는 일반·주변기술을 구분하여 하나만 평가)
- 품질심사 평가지표
  -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가구 제품(2022.09.01부터 적용)

- 기술심사 평가지표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기술의 혁신성
  -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본질적인 기능 관련 또는 일반·주변기술을 구분하여 하나만 평가)

- 디자인심사 평가지표
  - 혁신성
  - 심미성
  - 사용성
  - 조화성

- 품질심사 평가지표
  -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제품규격서 [별지 제1호의 12서식] 작성 시 유의 사항

- **'납품가능 규격'은** 우수제품 지정 이후 **납품 가능**한 **계약 규격**을 의미하며,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신청 상 최대값**(시험성적서 값)' 및 '**비교가능 규격**(KS, 최소 녹색기준 등)'과 비교하여 작성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23),
기계장치·과기의료·화학섬유·사무기기 (7144), 전기전자 (7233),
정보통신·지능정보 (7285)

5. 생산실태조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현황, 매출실적, 신청제품 생산실태 등 제품 생산과 관련된 사항 조사

- **(유의사항)** 1차 심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협업체*의 참여기업**이 생산현장실태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 인정

  * 협업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
  ** 참여기업: 협업체에 참여한 제조 기업
  *** 추진기업: 협업체에 참여한 기술 보유 기업

- 조사기관
  - 조달품질원

    * 전수조사가 아닌 직접생산 위반 의혹업체에 대해 계약이행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선별

- 부적합업체에 대한 조치
  - 계약심사협의회의 2차 지정심사 시 우수제품 지정제외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23),
기계장치·과기의료·화학섬유·
사무기기 (7144), 전기전자 (7233),
정보통신·지능정보 (7285)

협업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력지원팀
(042-331-0577,0564)

6. 2차 심사

■ 조달품질원에서 최종규격서 작성

- 최종규격서 확정
  - 우수제품 지정 신청 서류의 기술인증 내용, 품질인증 기준 및 납품가능 규격 등을 최종규격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정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제출처: 조달품질원 실태조사 담당자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우수제품 지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 심사대상
  - 1차 심사 통과한 제품

- 검토사항
  -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신청자의 불공정 행위 등 우수제품으로서 적정성 여부
  -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23),
기계장치·과기의료·화학섬유·
사무기기 (7144), 전기전자 (7233),
정보통신·지능정보 (7285)

7. 최종 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의 2차 심사 결과 보완사항 등이 없는 제품을 최종 우수제품으로 지정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우수제품 지정증서 교부

※ 단, 지정증서에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

→ 참여기업의 독립적인 지정 효력 불인정

- 지정증서 교부 후 우수제품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23),
기계장치·과기의료·화학섬유·
사무기기 (7144), 전기전자
(7233),정보통신·지능정보 (7285)

Ⅳ. 우수제품 지정 이후

1. 단가계약

■ 우수제품 계약

- 우수제품 지정(규격추가 포함)을 받은 제품은 제3자 단가계약 신청 가능

- 신청

구 분	신 청 기 간
신규계약, 수정계약(규격추가)	연중 신청 가능
재계약,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 만료일 전

※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재계약(새로운 계약 포함)을 요청할 경우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임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기간

– 제3자 단가계약의 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함

※ 단,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아래 신청 서류의 4번 가격자료 제출은 생략

- 계약관련 서류 접수처

구 분	접 수 처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02-521-0014)
충청, 호남, 영남 지역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042-471-3006)

※ 2022년 2월부터 나라장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 계약관련 신청 서류

1. 계약요청서(별지 제6호의 1서식)
2.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1부
3. 제품규격서 1부(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확정된 규격과 동일한 규격)
4.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자료총괄표, 거래내역, 매출장,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5. 관계 법령에 형식등록 또는 안전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에는 형식등록, 안전인증서, KS인증 1부(해당제품인 경우 반드시 제출)
6. 각종 기술 및 품질인증서 사본(특허, 실용신안의 제품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록원부(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 첨부) 1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1부
8.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1부
9. 가격자료 CD 1부
10. 원가계산검토 동의서 및 원가계산서 1부.(신규 및 수정계약인 경우)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
12.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13. 제품의 설치시공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현장설치도 계약인 경우)

■ 할인행사 실시

• 신청 기간

– 행사 시작일 최소 3일 이전에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로 신청

• 신청 방법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메뉴 → 물품 → 우수제품관리 → 할인행사 신청

• 가능 횟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번호(10자리)에 대하여 최대 5회 이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 (1회당 7~15일 까지)

※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나라장터로 요청

–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최대 3회

– 종료 후 20일 이내 동일 세부품명 기준 할인행사 불가

– 할인행사 기간 중 중복・취소・행사내용 변경 불가, 단, 수량 증량 행사 내용 변경은 허용 가능

– 할인행사 기간의 합산 일수는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 불허

■ 수정계약

• 수량증량, 가격변동이 필요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 가능

• 신청 방법

– 수정계약 요청 공문

– 수량・금액 변경 내역서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E-mail 제출

• 신청

– 계약기간 중 상시 신청 가능

■ 2천만원 이하 추가선택품목 별도구매 가능

• 추가선택품목의 납품요구 합계금액이 추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본품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구매 가능
단,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추가선택품목 납품요구금액 합계가 기준금액 초과 시 납품요구 차단됨

■ 우수제품 납품 시 준수의무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우수제품 규격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단,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경미한 외형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변경 납품 가능

- 납품 시 준수의무 위반 시 거래정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거래정지를 하였더라도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 특수조건」 제22조의4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18, 7216, 7275, 6148), 전기전자 (7260, 7089, 6148),
기계장치 (7089),
화학섬유·과기의료 (6148, 7260),
사무기기 (7218, 7275),
정보통신·지능정보 (7241)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기관소개(조직안내) 참조

2. 규격추가

■ **기술심의회 심의(단순 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심사)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 지정**

- 충족조건
  - 우수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 지정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 최초 지정제품과 동등이상의 기술·품질 수준인 경우

- 규격추가 절차 중지
  - 제22조 제1항의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호와 관련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제20조의 2에 의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 단, 수사・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과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만 중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속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 우수제품 규격추가)
– 신청서 양식: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각종서식)
– 신청관련 문의처: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서울·경기·강원지역: 02-521-0014
  • 충청·호남·영남지역: 042-471-3006

• 신청

– 지정기간 중 상시 신청 가능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23),
기계장치·과기의료·화학섬유·
사무기기 (7144), 전기전자 (7233),
정보통신·지능정보 (7285)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체크리스트

<table>
<tr><th>NO</th><th>검 토 내 용</th><th>YES</th><th>NO</th></tr>
<tr><td>1</td><td>지정 당시 적용기술 관련 기술소명자료 제출</td><td>☐</td><td>☐</td></tr>
<tr><td>2</td><td>지정 이후 적용기술의 권리 등 변동 이력 없음</td><td>☐</td><td>☐</td></tr>
<tr><td>2-1</td><td>(권리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권리변동 내역 작성
<table><tr><th>적용기술</th><th>변동내역</th></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td><td></td><td></td></tr>
<tr><td>3</td><td>신청제품 관련 품질소명자료 제출</td><td>☐</td><td>☐</td></tr>
<tr><td>4</td><td>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제출</td><td>☐</td><td>☐</td></tr>
<tr><td>4-1</td><td>구성대비표 작성 내용 중 “적용기술” 및 “품질소명자료” 미적용된 신청 모델 없음</td><td>☐</td><td>☐</td></tr>
<tr><td>5</td><td>신청제품 목록(별지 제4호의2 ‘가’서식) 제출〈엑셀 파일〉</td><td>☐</td><td>☐</td></tr>
<tr><td>6</td><td>모델별 적용내역(별지 제4호의2 ‘나’서식) 제출</td><td>☐</td><td>☐</td></tr>
<tr><td>7</td><td>신청제품에 대한 물품목록정보(18자리) 취득</td><td>☐</td><td>☐</td></tr>
<tr><td>8</td><td>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10자리)는 우수제품과 동일함
<table><tr><th>구 분</th><th>신청제품</th><th>우수제품</th></tr><tr><td>세부품명번호</td><td></td><td></td></tr></table></td><td>☐</td><td>☐</td></tr>
<tr><td>9</td><td>신청제품의 물품목록정보(18자리)는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상이함</td><td>☐</td><td>☐</td></tr>
<tr><td>10</td><td>우수제품 및 신청제품에 대해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인 경우)</td><td>☐</td><td>☐</td></tr>
<tr><td>11</td><td>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td><td>☐</td><td>☐</td></tr>
<tr><td>12</td><td>관련법령에 따른 필수인증 제출
(예: KC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td><td>☐</td><td>☐</td></tr>
<tr><td>13</td><td>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td><td>☐</td><td>☐</td></tr>
<tr><td>14</td><td>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제출</td><td>☐</td><td>☐</td></tr>
<tr><td>15</td><td>‘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 제출</td><td>☐</td><td>☐</td></tr>
</table>

3. 지정기간 연장

■ **우수제품 품질 유지 여부 등「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12조 및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속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 우수제품 기간연장)
  - 신청서 양식: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각종서식)
  - 신청관련 문의처: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서울·경기·강원지역: 02-521-0014
    - 충청·호남·영남지역: 042-471-3006
-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조건

- 지정연장 기간은「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르며, 중복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기간을 합산하여 연장 가능

■ 제외 사유

-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연장신청 기한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고액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업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489)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 납품실적 –

구분	NO	검 토 내 용	YES	NO
공통 사항	1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 자료를 제출 여부	□	□
	1-1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NEP, NET, 특허, 실용신안)	□	□
	1-2	(1-1이 "NO"인 경우) 최근 2년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한함	□	□
	2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2-1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등)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
	2-2	(2-1이 "NO"인 경우) 최근 2년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	□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여부	□	□
	6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	□	□
해당 요건 사항	7	최근 1년(3년) 이내(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 제출 여부	□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 기술개발투자 5% –

구분	NO	검 토 내 용	YES	NO
공통사항	1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 자료 제출 여부	□	□
	1-1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NEP, NET, 특허, 실용신안)	□	□
	1-2	(1-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한함	□	□
	2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2-1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등)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
	2-2	(2-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	□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여부	□	□
	6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	□	□
해당요건사항	7	기술개발 투자현황(별지 제3호의 6서식) 작성 및 제출 여부	□	□
	8	연장신청 직전연도의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서(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여부	□	□
	9	기술개발투자비율(기술개발비/총매출액)	(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 고용증가: 소기업 5%, 중기업 4% –

구분	NO	검 토 내 용	YES	NO
공통서류	1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 자료를 제출 여부	☐	☐
	1–1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NEP, NET, 특허, 실용신안)	☐	☐
	1–2	(1–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한함	☐	☐
	2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2–1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등)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
	2–2	(2–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	☐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여부	☐	☐
	6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	☐	☐
해당요건사항	7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
	8	연장신청일 기준 고용인원을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내국인**만을 대상(대표자·중도퇴사자 제외)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	☐	☐
	9	구분 / 지정 당시 기준 인원 / 연장 신청일 기준 인원 인정월 / 지정일 전월: / 신청일 6개월 전월: / 신청일 전월: 인원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전체 인원 / / / / / / / 청년 인원 / / / / / / /		
	10	(9 각 기준일별 가입인원 "불일치"의 경우) 불일치에 대한 소명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 고용증가: 소기업 20%, 중기업 15% –

<table>
<tr><th>구분</th><th>NO</th><th>검 토 내 용</th><th>YES</th><th>NO</th></tr>
<tr><td rowspan="9">공통
서류</td><td>1</td><td>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자료를 제출 여부</td><td>☐</td><td>☐</td></tr>
<tr><td>1-1</td><td>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td><td>☐</td><td>☐</td></tr>
<tr><td>1-2</td><td>(1-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한함</td><td>☐</td><td>☐</td></tr>
<tr><td>2</td><td>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td><td>☐</td><td>☐</td></tr>
<tr><td>2-1</td><td>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등)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td><td>☐</td><td>☐</td></tr>
<tr><td>2-2</td><td>(2-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td><td>☐</td><td>☐</td></tr>
<tr><td>3</td><td>(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td><td>☐</td><td>☐</td></tr>
<tr><td>4</td><td>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td><td>☐</td><td>☐</td></tr>
<tr><td>5</td><td>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여부</td><td>☐</td><td>☐</td></tr>
<tr><td>6</td><td>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td><td>☐</td><td>☐</td></tr>
<tr><td rowspan="5">해당
요건
사항</td><td>7</td><td>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td><td>☐</td><td>☐</td></tr>
<tr><td>8</td><td>연장신청일 기준 고용인원을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내국인만을 대상(대표자·중도퇴사자 제외)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td><td>☐</td><td>☐</td></tr>
<tr><td>9</td><td>정규직 등 신규채용 비율 확인에 관하여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의견서</td><td>☐</td><td>☐</td></tr>
<tr><td>10</td><td colspan="3"><table>
<tr><td>구분</td><td colspan="2">지정 당시 기준 인원</td><td colspan="4">연장 신청일 기준 인원</td></tr>
<tr><td>인정월</td><td colspan="2">지정일 전월:</td><td colspan="2">신청일 6개월 전월:</td><td colspan="2">신청일 전월:</td></tr>
<tr><td>인원수</td><td>건강보험</td><td>국민연금</td><td>건강보험</td><td>국민연금</td><td>건강보험</td><td>국민연금</td></tr>
<tr><td>전체 인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11</td><td colspan="3">(10 각 기준일별 가입인원 “불일치”의 경우) 불일치에 대한 소명</td></tr>
</table>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 수 출 –

구분	NO	검 토 내 용	YES	NO
공통 사항	1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자료를 제출 여부	□	□
	1–1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
	1–2	(1–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한함	□	□
	2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2–1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등)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
	2–2	(2–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	□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여부	□	□
	6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	□	□
해당 요건 사항	7	해외 진출 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	□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 재난 등 국가경제 위기극복이 필요한 경우 –

구분	NO	검 토 내 용	YES	NO
공통사항	1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자료를 제출 여부	□	□
	1-1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
	1-2	(1-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한함	□	□
	2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2-1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등)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
	2-2	(2-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	□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여부	□	□
	6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	□	□
해당요건사항	7	직접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	□	□

Ⅴ. 우수제품 기술·품질 확보

1. 사후관리(지정)

■ 경고

- 사유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 협업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 사항이 변동 되거나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 해야 할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 우수제품 적용기술 변동 사항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 지정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연속 3회 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 경고 누적

  – 지정기간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우수제품 지정 취소

  – 경고 2회 이상 받은 경우 지정기간 연장 불가

■ 지정효력정지

- 사유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1조의2

○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 거래정지 조치 해제일까지 지정효력 정지

○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확정 전인 법원(하급심 포함)의 판결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사유가 확정될 때까지 지정효력 정지(우수제품업체가 승소한 경우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

○ 우수제품업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범위를 벗어난 때부터 지정효력 정지

○ 폐업·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제품 생산·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업체가 협업 변경 승인절차 진행 중인 경우
  – 협업변경 승인일까지 지정효력 정지

○ 제품규격서와 제품설명서 등 신청자료 간에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여 최종 규격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최종 규격서를 확정할 때까지 지정효력 정지

○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 조항 복원(2020.10.1. 시행)

  – 거래정지, 법률분쟁으로 기술이 무효 또는 침해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우수제품 지정 효력 정지

■ 우수제품의 지정취소

- 사유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2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 우수제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 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

나.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나.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 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및 소프트웨어 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거나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 공급자 계약 및 소프트웨어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

라.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마. 등록일이 7년 경과된 특허 등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사.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규정 제25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아. 우수제품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제재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이전 회차의 점수를 적용하여 지정받은 우수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다른 경우

○ 우수제품 지정 등의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의 경우(품목 특성상 외국산 부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 결정 (2022.09.01.부터 적용))

• 절차

– 우수제품 지정취소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수제품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효과

– 우수제품 취소된 경우 즉시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 우수제품으로서의 효력 상실, 계약 체결 불가능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23),
기계장치·과기의료·화학섬유·
사무기기 (7144), 전기전자 (7233),
정보통신·지능정보 (7285)

2. 사후관리(계약)

■ 계약 해지 등 제재조치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우수제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음

○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된 때

○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체결 절차 중지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계약체결된 우수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19조의3에 따라 **계약체결의 절차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음

○ 제3자 단가로 신규계약, 재계약, 수정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 우수제품 지정취소 사유 발생 등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절차 중지 가능

○ 계약체결 절차 중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래정지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2조에 따라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

◦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 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 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물품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나.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마.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 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사.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 판매중지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음

1.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조 공장의 이전, 필수 제조 시설·장비의 보수·교체,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거나 재고부족이 현저할 경우
3. 타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4. 해당 우수제품에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되어, 계약상대자에 지정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5.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7. 직접생산확인서, 법령에서 정한 면허 등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8.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9.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
10. 관련법령 및 기준의 개정, 신규적용 등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1.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미초과된 경우 판매 재개
12.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정처분 시까지
13. 직접생산확인 취소, 제조등록 말소, 인증 취소 등 관련법령·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적용기술 일부적용 등으로 지정요건이 결여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또는 행정처분 시까지
14. 우수제품 지정 효력 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관련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건설환경 (042-724-7218, 7216, 7275, 6148), 전기전자 (7260, 7089, 6148), 기계장치 (7089), 화학섬유·과기의료 (6148, 7260), 사무기기 (7218, 7275), 정보통신·지능정보 (7241)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기관소개(조직안내) 참조

자주 하는 질문

Ⅰ. 지정 신청 관련 질문

1. 우수제품 지정과정은?

① 신청서 온라인 접수 → ②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③ 신청제품 공지 및 의견서 접수 → ④ 1차 심사[1] → ⑤ 1차 심사 결과 통보 → ⑥ 2차 심사[2] → ⑦ 우수제품 지정 → ⑧ 지정증서 수여 → ⑨ 계약 요청 및 체결

구분	심사 내용
1차 심사[1]	▸ 기술심의회 심사[심사분야별로 교수, 변리사, 특허심사관 등으로 구성(5~10인)] ▸ 심사통과 기준 – 특허제품 등: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 신인도 점수가 70점 이상 (제품 특성에 따라 성장유망, 일반,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제품: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2차 심사[2]	▸ (구매담당부서) 대상 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조달품질원) ▸ (구매업무심의회)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 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여부 결정

2.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는?

- 제출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경제성효과 원가분석 총괄표 등 필요시 제출서류 이외에는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미제출시 반려되며, 접수마감일 이후 별도 보완 받지 않음으로 서류 누락되지 않게 준비 요망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제품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2'가'서식)	반드시 제출
4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설〉 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별지 제1호의 4 서식)	반드시 제출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7	〈삭제〉	
8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9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반드시 제출
10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1	신청 모델(규격)내역(별지 제1호의 9'가'서식)	반드시 제출
12	〈삭제〉	
13	〈삭제〉	〈삭제〉
14	○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반드시 제출

번호	서 류 명	비고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 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 이내)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15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12 '가' 서식)	
16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7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8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19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20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반드시 제출
21	〈삭제〉	
22	○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반드시 제출

번호	서 류 명	비고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 제출
2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제출
25	별표 6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해당 시)
26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여부 확인서'	2차 심사전 반드시 제출

3.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처는?

– 온라인 접수: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 우수제품 신규지정)

– 신청관련 문의처: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서울·경기·강원지역: 02–521–0014
  • 충청·호남·영남지역: 042–471–3006

4. 우수제품 지정/심사대상 제외 품목은?

- 신청서류 중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7항)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상이한 경우는 예외
  -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혁신제품

- 심사 또는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 중견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제8조 제7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이미 지정을 받은 우수제품과 물품목록번호(16자리)가 동일한 경우

- 신청 제품이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성질·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 높아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 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 우수제품 신청자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거나, 하게 한 경우로서 사실로 확인된 경우
-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인 경우(단, 품목 특성상 외국산 부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 결정하며, 2022.09.01부터 시행)

5. 우수제품 지정 신청하여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에 대한 누적 신청횟수 산정 기준은?

'16년 7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식별번호기준에서 동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적용기술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6. 우수제품 지정/심사대상 제외 대상 중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에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서를 포함하나요?

- 적용기술이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허, NET, NEP 등을 말하며, 품질인증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신청하는 제품의 모델이 여러 가지인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품명과 적용기술 및 용도가 같은 모델인 경우 1건으로 지정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신청품명이 동일하더라도 적용기술이 다를 경우 분리하여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8. NEP 또는 NET에 수반된 특허가 등록 후 7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특허를 포함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특허를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무관하나, NEP, NET에 수반된 특허라도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는 1차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9. 특허 기술의 권리가 통상실시권인 경우 지정신청 가능 여부?

- 통상실시권은 신청 불가하며, 전용실시권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실시내용'은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양도, 생산 등 일부로 받을 경우 신청은 반려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디자인등록의 경우는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합니다.

10. 법인회사로 특허 권리자가 대표(또는 회사 직원)일 경우 지정신청 가능 여부?

- 신청 불가하며, 신청업체가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거나 또는 공동권리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법인회사가 아닌 지사(지점)인 경우에도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사(지점)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음으로 지사(지점)으로 지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거규정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4조 제6항에 특허·실용신안 등의 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청 예규 제115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의 Ⅲ. 제출인별 특허고객번호 발급방법 및 기준에 '법인의 지점(또는 영업소)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본점 명칭과 본점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등록원부의 권리자가 법인의 지사(지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12.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 일반제품은 반드시 임대 또는 자가 공장이 있어야 하며, S/W 제품인 경우 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사항) ①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추진기업)의 경우, 1차 심사 이후 협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며, ② 1차 심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협업체의 참여기업*이 생산현장실태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 인정

13.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또는 OEM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불가합니다. 우수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임으로 공급의 의미를 갖는 OEM은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공장의 경우 신청제품의 직접 생산여부 및 품질 성능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OEM인 경우 12번의 예외사항을 참조

14. 일부 업체에서 품질인증 없이도 지정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허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특허만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품질인증없이 신청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늦어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품질인증 없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신청 가능한가요?

- 품질 인증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신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를 통해 1차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의 인정기간은 2년입니다.

16.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 품질 인증서는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인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7. 조달업체 신규등록방법은?

- 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 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내용을 입력 후 송신 클릭 → 시행문출력을 클릭 → 인쇄한 시행문에 기재된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관할지방조달청에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방문 송부 → 지방청의 승인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 메뉴에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인증서 관리 → 인증서신규등록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차례로 수행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

18. 목록화 요청의 처리 절차는?

- 목록화 요청이란 국가에서 관리·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하기 위한 물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물품관리용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목록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상품정보 → 목록화 요청 → 품목등록요청 화면에서 등록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화 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 등에서 사용됩니다. 품목등록 요청방법은 상품정보시스템 화면 우측 상단의 '시스템 매뉴얼'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화 처리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는 시스템 화면 상단의 목록화요청 → 진행상태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 목록번호, 분류번호, 식별번호란 각각 무엇을 의미 하나요?

-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됨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분류하고 구별(식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 에서 각종 물품 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 자료를 목록화, 전산화, 체계화하여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물품의 생산·수요·공급·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 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정부 보유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고, 각 분류에 의해 물품 고유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 [대분류(Segment) – 중분류(Family) – 소분류(Class) – 세(細)분류 (Commodity)]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 식별이란 한 개 한 개의 물품을 구별하는 것이고, 분류란 같은 종류의 물품을 한 곳으로 모아서 다른 종류의 물품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식별번호란 각각의 구별된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숫자입니다.

20. 신인도 심사시 KS인증 등에 대한 평가는 신청 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일제품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동일제품(품명)의 기준은 물품분류번호(8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규격(모델)별로 인증을 획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GD 등 우수제품신청서 마감일로부터 인증(등록)일 등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신인도 가점은 불인정되며, KS, 단체표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2022.09.01일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의 인정기간이 2년 → 3년으로 확대)

21. 해외수출로 신인도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 건수 및 수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2022.08.31일까지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 시 해외수출 실적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을 기준 최근 5년간 수출 총액으로 차등 가점을 부여하나, 2022.09.01일부터는 10만불 이상인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반드시 별지 제1호의 15서식에 명시 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등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2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의 2 종합평가 대상은?

-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준으로 지정기간의 누적기간이 10년 이상인 우수제품 장기지정업체를 말합니다.

23. 누적기간 10년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준으로 중복된 기간과 기간연장 된 기간을 제외하고 기본 지정기간만 계산합니다.

24. 종합평가 평가기준의 예외사항에 수출 또는 고용 증가율의 기준일은?

- 신청서 마감일 기준 전월을 기산합니다.

25. 1차 심사 시 신청업체가 준비해야 할 것과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 따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드실 필요가 없으며, 신청시 제출한 지정신청서류로 발표하며 심사 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요시 실물(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물 준비가 어려운 경우 그래픽, 음성, 자막 등 없이 제품의 순수 실물을 촬영한 동영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업체 당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으로 총 2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26. 조달청에서 신청업체 지정신청 PT를 위해 보내주는 신청서류 및 송부 방식은?

- 신청업체가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 한 전체서류를 신청업체의 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27. 1차 심사 후 심사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 1차 심사 결과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서 신청업체의 합격 여부를 공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심사점수, 평가 의견 등의 상세결과는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업체 로그인 후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8. 1차 심사인 기술·품질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전 회차의 산정기준은?

- 2019년 2월부터 지정심사 평가 방식이 개선되어 업체 희망 시 기술품질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부품명기준, 동일기술 4회까지 산정하며, 회차별 기술·품질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인정합니다.

- 다만, 이전회차의 신청제품과 심사생략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심사 생략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 회차의 점수를 적용하여 지정받은 우수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다른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 이전회차 평가점수의 유효기간은 1차 평가점수 취득 이후 1년 또는 연속 4회만 유효합니다.

- (유의) 규정 개정(2021.08.09.)으로 신인도 최대 배점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22년 4회차부터 개정규정의 신인도 점수(최대 3점)을 적용

29. 특허적용여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발급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30. 지정신청서류의 보완 범위 및 보완방법은?

-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만 가능합니다. 신청업체의 해당서류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항은 보완기간일지라도 보완할 수 없습니다.

- 지정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 후 보완 기한 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

31. 조달청에서 고시한 성장유망제품으로 지정신청 할 경우 심사방법을 일반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 심사방법은 선택할 수 없으며, 성장유망제품에 해당할 경우 '성장유망제품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2. SW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품질인증서로 GS인증만 제출해도 지정신청 가능한가요?

- 지정관리규정 제3조제4항제5호에 따라 GS인증을 제외한 추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3. 1차 심사방식은 대면심사인가요?

- 신청자가 조달청이 지정한 별도 장소(조달청 3동 지하 1층)에서 심사위원에게 대면 발표 후 질의·응답하는 '오프라인 심사'와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에서 심사위원에게 영상을 통해 발표, 질의·응답하는 '온라인 심사'가 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방식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34. 지정 시작일을 선택할 수 있나요?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지정일(N)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지정일(N)+6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규격서 확정 및 원가계산서 발급 등 계약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시면 N+6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5. 최종 규격 확정은 어떻게 하나요?

- 조달품질원 실태조사 담당자에게 최종 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우수제품 심사자료와의 품질기준 일치 및 납품가능규격을 확인하여 최종 규격서를 확정합니다. 최종 규격서가 확정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수제품 적용기술 반영 미비 등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달품질원에서 최종 규격서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Ⅱ. 계약 관련 질문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 종합쇼핑몰은 수요기관을 위하여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 「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2. 제3자 단가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각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각 수요 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을 통해 직접 해당물자의 납품요구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 및 검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3. 우수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방법은?

- 우수제품 계약 요청서(별지 제6호의 1서식)을 작성하여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업체)우수제품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협회) 서류 검토 및 보완 요구 → (협회)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서 송부 → (조달청) 계약방법 결정 → (조달청, 업체) 나라장터에서 전자수의시담 → (조달청) 계약서 초안 발송 → (업체) 계약응답서, 계약보증금, 인지세 등 제출 → (조달청) 최종계약 통보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의 절차를 거쳐 종합쇼핑몰에 등재됩니다.

  ※ 2022년 2월부터는 나라장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계약요청서 접수 예정

4. 우수제품의 계약기간은?

- 제3자 단가계약의 기간은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지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제3자단가계약 물품납품요구 및 이후 처리절차는?

가. 제3자단가계약 물품요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조달요청

나. 조달청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계약업체에 납품요구

※ 통계관리, 대금지급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승인절차 없이 수요기관에 전송

다.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

라.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계약업체가 수요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

마. 수요기관은 검사 및 검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물품납품 계약업체에게 전송

바. 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사. 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계약업체에게 물품대금 지급
- 대지급: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지급
- 직불: 수요기관이 대금 직접 지불

6. 종합쇼핑몰에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상품)이 없는 경우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에서 자주 또는 많은 물량의 필요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으므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모든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 외, 소액거래 또는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별도 요청에 의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7.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던 상품이 갑자기 없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계약건이 종료된 경우

②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남아있다면 재계약 준비중인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생산 중단 등으로 판매중지를 요청한 경우

④ 부정당업자 및 납품검사 불합격 등으로 종합 쇼핑몰의 거래정지가 된 경우

대부분 ①~④의 경우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계약)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된 우수제품이 지정 효력정지를 받을 경우 기 납품요구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실제 납품 완료 이전에 지정효력이 정지되었더라도 납품요구 시점에 우수제품으로서 효력이 있었다면 우수제품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납품 요구된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질 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수요기관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우수제품 규격 위반 및 허위가격일 경우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22조 제8항: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9. 장기계속계약으로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총액계약 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2차 계약기간 중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 계약체결 당시 유효한 우수제품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므로 계속 계약 체결하여 동일한 우수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10.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종합쇼핑몰 상에 만료된 품질인증서가 표시되지 않을 뿐 계약신청은 가능하며, 별도의 시험성적서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 우수제품 계약업체가 아래「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계약특수조건」제17조(시험성적서 제출) 제1항에 의거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험성적서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납품 시마다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을 경우 동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2.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 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는 계상되어 있나요?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는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가「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계상)되어 있습니다.

13.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존 납품요구 건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시 수량 증가 및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요?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제3자 단가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 납품요구건에 대한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납품요구 수량 변경에 있어 감량은 가능하나 증량은 불가합니다.

14. 현장설치도로 등록된 제품에 로스율(할증율)이 포함되어 있는지?

- 현장설치도로 등록된 제품은 현장설치 시에 일괄적으로 할증수량(자투리, 절단되어 버려지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어 계약단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5. 할인행사시 다량납품요구 할인도 중복하여 할인율을 적용하는지?

- 할인행사의 할인율과 다량납품요구의 할인율을 비교하여 할인율이 높은 쪽이 적용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6.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우수제품관리 → 우수제품변경요청서 작성**메뉴에서 해당 계약 건을 선택한 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 요청하면 됩니다.

17. 납품기한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상단메뉴 **마이페이지 → 주문변경요청현황**에서 수요기관이 보낸 분할납품 변경요청서를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18. 수요기관과 협의 하에 납품규격이 아닌 동등이상 제품을 납품해도 되나요?

- 수요기관과 협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조달청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우수제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4조(납품 시 준수의무 등) 규정 위반으로 거래정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경미한 외형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변경 납품이 가능합니다.

Ⅲ. 규격 추가 관련 질문

1. 접수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아니요.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2. 규격추가 신청 후 심사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기술심의회에 상정되는 건은?

-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규격(모델)추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단순 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추가선택품목인 경우 규격추가 사항인가요?

- 규격추가가 아닌 규격서 수정사항에 해당되오니 분야별 지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규격추가 요건 중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 신청규격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5. 규격추가 심사 시 업체에서 PT를 하나요?

- 제품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하여 업체가 원하는 경우 PT를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분야별 담당자에게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규격추가 중지 절차란 무엇인가요?

- 2018년 11월 신설된 조항으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제품 지정 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규격추가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7. 규격추가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해당업체가 수정계약 전에 취해야 할 후속절차가 있나요?

- 규격추가 이후 추가된 규격에 대해 분야별 우수제품 지정 담당자에게 규격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규격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계약은 불가합니다.

8. 특허적용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 규격(모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의) 특허기술 적용여부'가 일부적용 또는 미적용인 경우, '특허기술 적용수준'이 일부적용인 경우 규격추가 제외

Ⅳ. 지정기간 연장 관련 질문

1.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 기본 지정기간 3년에 납품실적 및 해외수출 등의 연장 자격조건을 충족 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장기간은 "최대 3년 까지"입니다.

2. 우수제품 지정기간 및 계약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우수제품협회 본회 및 중부 사무소로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 접수 → 서류 검토 보완 후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송부 →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지정업체에 연장 결과 문서 통보 → 연장 업체는 조달청에 지정증서 반납 및 지정증서 재교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요청서를 우수제품협회로 제출하여 (임시)계약기간 연장을 받으실 수 있으나, 원자재 가격하락 등에 따라 일부품목의 단가인하 등으로 2개월 계약기간 연장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만료일을 고려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여러 자격을 동시 충족 시 1년에 한번씩만 신청해야 하나요?

- 2014. 3. 1일부터 지정기간 연장 범위를 확대 시행코자 여러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한번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4. 고용실적 및 청년고용실적으로 기간연장 신청 시 인정 기간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인정기간은 직전월을 포함한 6개월로 가산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일: 2018.12.15., 연장신청일: 2021.10.21.
지정일 인정기간: 2018년 11월
연장신청일 인정기간: 2021.04.01.~2021.09.30.

-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을 한 업체의 경우 지정증서 재교부한 날을 지정일로 봅니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는 변동의 경우에는 변동일을 지정일로 봅니다.

5. 인정기간 6개월 고용인원은 평균고용인원을 말하나요?

- 인정기간 6개월 동안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고용인원을 말하며, 현재 재직중인 자만 인정합니다.

6. 고용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7. 기간 연장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나요?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출력범위: 전체)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모두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8. '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 고용인력 산정 시 외국인을 포함해야 하나요?

- 고용인력 산정 기준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내국인의 정규직 채용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고용인원 증가 실적'과 동일하게 외국인 및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9. 성능인증 등 품질인증서가 만료되었을 경우 기간 연장 신청 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품질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합격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NEP, NET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유효기간이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기준 잔여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정이후 NEP, NET를 취득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 기존에 NEP, NET 인증으로 지정 받게 되면 지정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16년 7월 규정개정을 통해 지정연장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정이후 NEP, NET를 취득한 경우에도 1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11. 기간연장 관련 물품납품실적증명서 발급은?

- '물품납품실적증명서'는 조달청 계약 여부와 대금 지급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조달업체 업무(로그인 필요) → 계약실적증명 → 계약실적검색목록에서 해당 계약번호 등을 찾아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 지급방법이 대지급인 경우 조달청으로, 그 외는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 매뉴얼은 나라장터 메인화면 → 실적증명서 → 매뉴얼다운로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2. 자사의 우수제품 종결 실적 조회는?

-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조달정보개방포털 → 종합분석 → '우수제품 중앙조달 종결 내역'에서 자사의 종결 실적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에서도 조회 가능

13.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기간연장 시 해외수출 실적 증빙서류는?

- 직접수출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수출 신고필증(수출이행)을 제출해야 하고,
- 간접수출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자재 구매확인서, 대금 입금 확인서류, 영세율 세금계산서, 입금은행 또는 한국무역 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우수제품 해외수출 체크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구분	NO	검 토 내 용	YES	NO
공통사항	1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소명자료를 제출 여부	□	□
	1-1	적용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 기준 6개월 이상인지 여부 (NEP, NET, 특허, 실용신안)	□	□
	1-2	(1-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 NEP, NET에 한함	□	□
	2	품질소명자료 제출 여부	□	□
	2-1	품질소명자료(성능인증, K마크 등)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
	2-2	(2-1이 "NO"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합격증 제출 여부	□	□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여부 ※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여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여부	□	□
	6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제재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ex)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효력정지, 경고, 환수, 징수 등	□	□
해당요건사항	7	해외 진출 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	□	□

14. 기간연장 신청 시 우수제품의 납품실적 제한이 있나요?

- 납품금액 및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수출, 고용 시에도 납품실적이 있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했으나 2019년 2월부터 납품실적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납품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15.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간 연장 시 조달청장이 정한 연장기간은?

- 심의를 통해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16. 지정기간 연장신청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신청하면 되나요?

- 지정기간 신청은 가능하나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30일부터 만료일 사이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연장 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 종합쇼핑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수요기관 물품 구매 곤란, 계약체결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을 위해 만료일 30일 전까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V. 판로 지원 및 기타 질문

1.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시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3호 바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목 및 바목 참조)
  * "우수조달공동상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5를 말함) 이상의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 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기준,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수제품을 수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통지 하여야 합니까?

-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 나목·다목 및 제5호 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나, **우수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5항 참조)

3. 우수제품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 하나 **우수제품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치 않습니다.**

4. 우수제품이라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구매해야 하나요?

- 2006년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과당경쟁 방지 및 가격 안정,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 특별한 사유란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또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 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여타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입찰 하는 경우 등을 의미 합니다.

- **우수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제품"으로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중기간 경쟁대상**

품목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전용몰에서 직접 구매(제3자단가 분할납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 규정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우수제품**, 성능인증, NEP, NET, GS 등

-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검사·검수 등 계약조건대로 납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의 책무를 다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6.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의 절차는?

① 조달청 신청 절차: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에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는 않으며, 해당 물품의 다른 업체들과 함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각종서식 → 우선구매 지원 요청서 다운로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수제품구매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회 회원사인 경우 협회로 신청바랍니다.

② 우수제품협회 신청 절차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각종서식 → 기타 → 협회 우선구매 추천 요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협회로 송부 → 관련 자료 검토 및 보완 → 수요처 담당자에게 우수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7. 조달업체의 기본정보(상호, 대표자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업체 정보 변경시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 신청을 통해 업체정보 변경(전화 및 팩스번호 등은 직접 변경 가능), 우수제품협회에 변경 알림과 함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로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조달업체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조달청의 승인절차 없이 업체가 단독으로 수정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 **수정 절차:**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하단의 수정(자기정보 확인)을 통해 해당항목을 수정하시면 완료됩니다.

-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 영문상호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 수,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및 핸드폰번호, 대표 대표자 여부, 공급물품 추가, 공장 전화 및 팩스번호, 제조물품의 대표물품여부, 공사·용역·기타업종의 대표업종여부, 공급물품 삭제, 제조물품 삭제, 공사·용역·기타업종 삭제, 입찰대리인 삭제

둘째, 조달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입찰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해당 항목을 수정하여 조달청으로 송신하면 조달청이 승인하게 됩니다.

- **수정 절차:**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입력) 후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지방조달청으로 송신이 완료됩니다. → 송신이 완료되면 시행문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시행문을 출력하여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변경신청한 조달청으로 우편(방문 가능)으로 송부합니다. → 조달청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 우편송부의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모든 페이지)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대표자(법인)의 인감이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 **승인이 필요한 항목:** 상호, 주소, 대표자, 공장주소 등 공장정보, 제조물품, 공사·용역·기타 업종, 입찰대리인, 지사등록(법인 본사인 경우) 등기부등본사항 등

※ 승인이 필요한 항목 내용 중에서, 주의할 사항단, 상호, 주소, 대표자가 각각(또는 동시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지방청 포함)이 국세청의 자료(시스템 연계)를 조회하여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문은 물론 증빙서류 일체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② 지정증서상의 내용 변경시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에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우수제품 지정증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반드시 송부 하여야 합니다.
관련 신청서류는 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각종서식 → 기타 → 별지 제6호의 2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소변경은 지정증서 재교부사항은 아니며, 나라장터에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술개발제품 구매금액에 '추가선택품목' 구매금액도 포함되나요?

- 추가선택품목은 구매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안내 매뉴얼

발행일 2021년 12월 일

발행처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편 집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강현지 사무관
권재령 서기관
이순주 사무관
김용대 사무관
T. 042-724-7283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T. 02-521-0014